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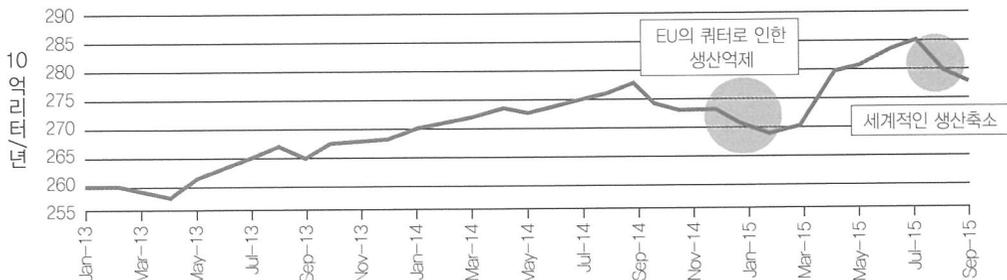
전 세계 원유생산 마침내 감소추세로

주요 5개 유제품 수출국(EU, 미국,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의 원유생산이 2년 반 만에 마침내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 가운데 지난 해 9월 뉴질랜드의 원유생산 감소폭이 7.5%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시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다수의 EU 회원국이 쿼터로 인해 생산을 억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2015년 4월부터 EU의 쿼터페지와 함께 그동안의 쿼터에 따른 생산축소를 상회하는 증산이 빠르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원유생산이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에 걸쳐 일

그 결과 주요 5개 수출국에 있어서의 2015년 9월을 기준으로 한 연간 원유생산량이 2,780억 리



Source: AHDB Dairy

터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정점에 달한 7월과 비교할 때 70억 리터가 감소한 양이다. 그 가운데 40억 리터는 지난 2개월에 걸친 뉴질랜드의 생산 감소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EU 및 미국

과 호주의 원유생산도 모두 감소세로 돌아섰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출처: Dairy Market Weekly No. 81(2015.11.19.)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일본의 낙농관련 TPP 대책

일본 정부는 11월 25일 전 각료로 구성되는 TPP 종합대책본부를 수립하고, 「TPP 관련 종합대책」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농림수산분야의 경우 지난 11월 20일의 자민당제언을 받아들여 「농정 신시대」를 선포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정책 방안을 중심으로 TPP 대책을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하였다.

첫째, 공격적인 농림수산업으로의 전환,

둘째, 주요 5개 품목(쌀, 유제품, 육류, 사탕, 밀)의 경영 및 공급안정 실현

그 가운데 낙농과 관련해서는, ①수익력강화 종합프로젝트의 추진, ②경영안정대책의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금번 TPP 관련 종합대책 안에는 「신 수출대국」, 「글로벌 허브(무역·투자의 국제중심거점)」 및 「농정 신시대」 등 세 가지 주요 시책 등이 포함된다. 그에 따라 TPP 효과의 활용 및 TPP의 영향

에 따른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하여 낙농분야에 있어서는 자민당의 제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즉, ‘공격적인 경영’의 관점에서 노동절약적인 기계화에 의한 생산비절감 및 품질향상 등을 통해 수익 및 생산기반강화를 실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축산클러스터사업의 확충, ②지급사료 생산 확대, ③유가공공장의 재편 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생크림 등 액상유제품을 「가공원료유생산지보급금지」에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아울러 협정발효 이전에 제도운동을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보급금단가를 금후의 경제여건변화에 맞춰 적절히 조정키로 하였다.

출처: 일본중앙낙농회의(JDC) 뉴스 126호(2015.11.30.)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

EU의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영국 사례)

EU의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은 학교에서 우유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학생들의 우유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조대상은 보육원, 유치원 및 초등 및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우유 및 유제품은 오전 중 또는 오후에 식사의 일부로, 혹은 아침에 시리얼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되나 조리에는 사용할 수는 없다. 또한 휴일캠프활동에 제공되는 우유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육원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미만 아동들의 경우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별도의 우유급식보조금만으로는 우유대금지불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서 중앙정부(Rural Payment Agency: RPA)를 통해 추가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 및 중등학교는 지방정부를 통해 우유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우유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유공급업자 또는 학교를 대신해서 우유급식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통해서 청구할 수 있다. 만일 학교가 직접 우유급식보조금을 신청코자 할 경우나 우유급식 관련 추가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정부(RPA)와 접촉하여 조언을 들 수 있다.

우유, 산양유 및 면양유 모두 우유급식 보조금의

대상이 된다. 다만 우유급식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 전유(全乳)이거나 부분탈지유이어야 한다.
- 초등 및 중등의 경우 중량기준으로 최소한 90% 이상 원유를 포함한 가공유 및 부분탈지유도 가능하다.
- 초등 및 중등의 경우 전유와 부분탈지유로 제조된 요구르트도 가능하다.

우유급식에 제공되는 우유·유제품은 EC 역내에서 생산 및 열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유당감소우유, 초고온살균우유(UHT) 및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성분을 첨가한 우유도 가능하다. 단, 불소성분을 첨가할 경우는 킬로그램 당 5mg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완전 탈지유제품은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실제 제공된 우유의 양에 따라 지급되며, 학생 1인당 1일 250ml까지이다. 현 보조금수준은 중앙정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우유급식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정부 웹사이트내(<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the-school-milk-subsidy-scheme-guid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http://dairy.ahdb.org.uk/talking-to-the-public/talking-to-schools/providing-school-milk/eu-school-milk-subsidy/#.VoyzYd7UrhMs>

번역 및 요약: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 석 진